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3. 16 선고 2020가단106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장충석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1. 1. 12

판결 선고 2021. 3.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한회사 E(이하 모이라한다)과 피고 B 사이의 2019. 9. 4.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40,(X)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E과 피고 C 사이에 2019. 11. 1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9. 11. 19. 접수 제15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12. E에 4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0. 12.로 정하여 대하였다(갑 제1호증). E이 주식회사 F(이하 모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그 대 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E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명의신탁약 정을 하고 F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갑 제2호증).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 회복으로 가액배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가 E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라 하더라도, 위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G에 대하여도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고, G과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 역시 취소되어야 한 다(원고는 G에 대하여도 피보전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사해해위취소 청구를 하기 위해 서는 청구취지 변경을 해야 한다).

2. 판단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이 F에 대하여 공사대 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이 그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 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 B이 아닐 것이라는

정황에 관한 것이고, 그 실제 소유자가 E이라는 점에 관한 근거 제시는 부족하므로, 다른 원인으로라도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G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G이 F에 대하여 여전히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변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달리 G이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역시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들은 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 B이 아닐 것이라는 정황에 관한 것이고, 그 실제 소유자가 G이라는 점에 관한 근거 제시는 부족하므로, 다른 원인으로라도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 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G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거나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G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전제로 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허윤범

별지